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



구 미 시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 : 2020.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구미시에서는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지역특화사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나.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1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1) 출연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 2) 대 표 자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이사장 장세용
- 3) 소 재 지 :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
- 4) 출연예정액 : 13억원
- 5) 출연금 사용처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나. 주요 사업

1) 수준 높은 시험·분석 지원을 위한 장비운영사업 : 550백만원

-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시험·분석 연구장비의 노후화 및 장비 이용 기업수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 및 업그레이드 비용 증가
-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와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저렴한 장비 이용수가 적용과 KOLAS 인증 유지 및 범위 확대 추진
- 장비업그레이드 및 영선유지를 통한 장비 활용률 향상 및 입주기업 등 장비사용 할인 제공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

2) 우수기업 발굴·유치를 위한 임대·시설운영사업 : 750백만원

- 기업 애로 해결 및 맞춤형 기업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잠재력 있는 지역 우수기업을 발굴·유치하여 강소기업으로 육성
-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저렴한 임대료 책정 및 감면, 시설 개보수 등 다양한 편익 제공
- 기술원 보유 지식정보 공유 및 기업홍보체계 활성화를 통한 기업과 협력성장, 공동연구개발 등 수요자 중심 기업 지원 강화

다. 출연의 필요성

1) 수준 높은 시험·분석 지원을 위한 장비운영사업 지원 필요

- 2003년부터 구축된 기술원 보유 시험·분석 장비의 76%는 5년 이상 노후화 되었고, 연구장비 노후화에 따라 지역 기업을 위한 수준 높은 시험·분석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발생
- 이용 건수 증가('17년 9,088건 → '19년 10,683건)에 따라 부품 및 소모품 교체비용 등 장비 유지보수비는 동반 상승하고 있으나, 타기관 대비 평균 59% 이상 저렴한 장비이용수가 적용으로 지속적인 적자 발생

< 연구장비 현황 요약 >

(단위 : 대, 백만원)

부서명	장비구축현황					비고
	2015년도 이전 구축		2015년도 이후 구축		노후화율	
	장비수	금액	장비수	금액		
시험분석연구센터	110	17,166	-	-	100%	시험·분석
융복합소재연구센터	66	11,286	-	-	100%	공정·테스트
미래이동통신연구센터	39	50,801	15	23,082	72%	"
실감미디어연구센터	9	5,073	8	5,577	53%	"
디지털헬스케어연구센터	48	3,801	50	5,781	49%	"
지능형웨어러블연구센터	-	-	12	5,250	0%	"
합계	272	88,127	85	39,690	76%	

※ 노후화율(%) = 2015년 이전 구축 장비 대수 ÷ 전체 장비대수

<장비지원 수입과 지출>

(단위 : 백만원)

구분		`17	`18	`19	`20	`21	비고
수입	장비수입[A]	1,400	1,425	1,645	1,750	1,889	
지출	지출 합계[B]	1,858	1,920	2,195	2,300	2,439	
	공공요금	717	722	735	750	772	
	유지보수비용	576	598	840	900	973	
	장비부서 인건비	565	600	620	650	694	
차이 [A]-[B]		-458	-495	-550	-550	-550	

- 기업 수요에 맞춘 장비 업그레이드 및 유지 보수 실시로, 지역 기업이 타지역 연구기관을 이용해야 할 때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수준 높은 시험·분석 지원으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20년 장비운영사업비 지원 활용 실적
 - 장비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19년 406백만원 및 '20년 873백만원(예상)
 -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 범위 유지(96백만원),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Eco-Lab, 국내 완성차 3社 전자기접합성(EMC) 인증시험기관 등 공인시험기관 자격 유지 및 시험분석서비스 제공
 - 장비활용 기업수탁과제 9건(442백만원) 발굴 및 기업과 공동연구개발 진행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2) 우수기업 발굴·유치를 위한 임대·시설운영사업 지원 필요

- 잠재력이 있고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을 발굴·유치·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타 기관 대비 최대 16% 저렴한 임대료 책정 운영

* 코로나-19로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 30% 감면 시행

- 늘어나는 시설 운영비 부담을 임대 수입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현재 타기관 대비 저렴한 임대료에 대한 재산정이 필요하나, 임대료 인상 시 지역 기업의 부담 증가 우려

< 유사기관 임대단가 비교 >

(단위 : 원/m²)

기관명	평균 임대단가(월)	비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	6,065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6,822	대비 11% ↓
금오공대 창업진흥센터	7,220	대비 16% ↓

※ 임대 전용면적 기준 환산 단가

- 노후화된 시설의 영선·유지를 위한 시설 유지 보수비 증가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임대시설 공용면적의 관리비 인상으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 기술원 자체 대응의 한계가 있음

< 시설임대 수입과 지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20년	비 고
임대율		70%	70%	
수입	수입 합계[A]	2,696	2,484	
	임대수입	2,037	1,887	
	기술원 자체 대응분	659	597	
지출[B]		3,446	3,234	
차 이 [A]-[B]		-750	-750	

※ 임대건물 : 진흥관, 혁신관, 성장관, 이노플라자, 국산화센터 등 총 9개동

※ '20년 현재 입주율 및 기업수 : 63.5%, 136개사(600여명)

-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준공에 따라 운영안정화까지 홍보·관리 비용 증가 등 환경요인과 저렴한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면서, 잠재력 있고 우수한 기업 유치 및 입주기업 성장 보육과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시설운영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

- '20년 임대·시설운영사업비 지원 활용 실적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입주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년 4월~12월까지 임대료 30% 감면으로 145개 기업에 총 266백만원 지원(예상)
 - 구미 첨단산업분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구미리더스 컴퍼니클럽(GLCC)' 26개社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대표사례: GLCC 프로그램을 통해 엘비루셈 14억원 수주)
 - 지역기업 애로해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원 1사1매칭 기업연구지원도우미(G-CM) 운영 '19년 117건 → '20년 136건
 - 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106개사)를 통한 R&D바우처사업 등 국비사업 선정과 4차 산업혁명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7개 분과, 47개 신규과제 도출
 - 입주기업 여건개선 및 지역기업 활용률 향상을 위한 공동활용 시설(다목적운동장 등) 개선, 입주기업 복지시설(운동장, 헬스장 등) 이용 및 공동시설 사용료 할인 혜택 제공
 - 지역 산업구조 개편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新전자산업 육성 세부계획 수립 및 「제품화 기술개발사업」 20개 내외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19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본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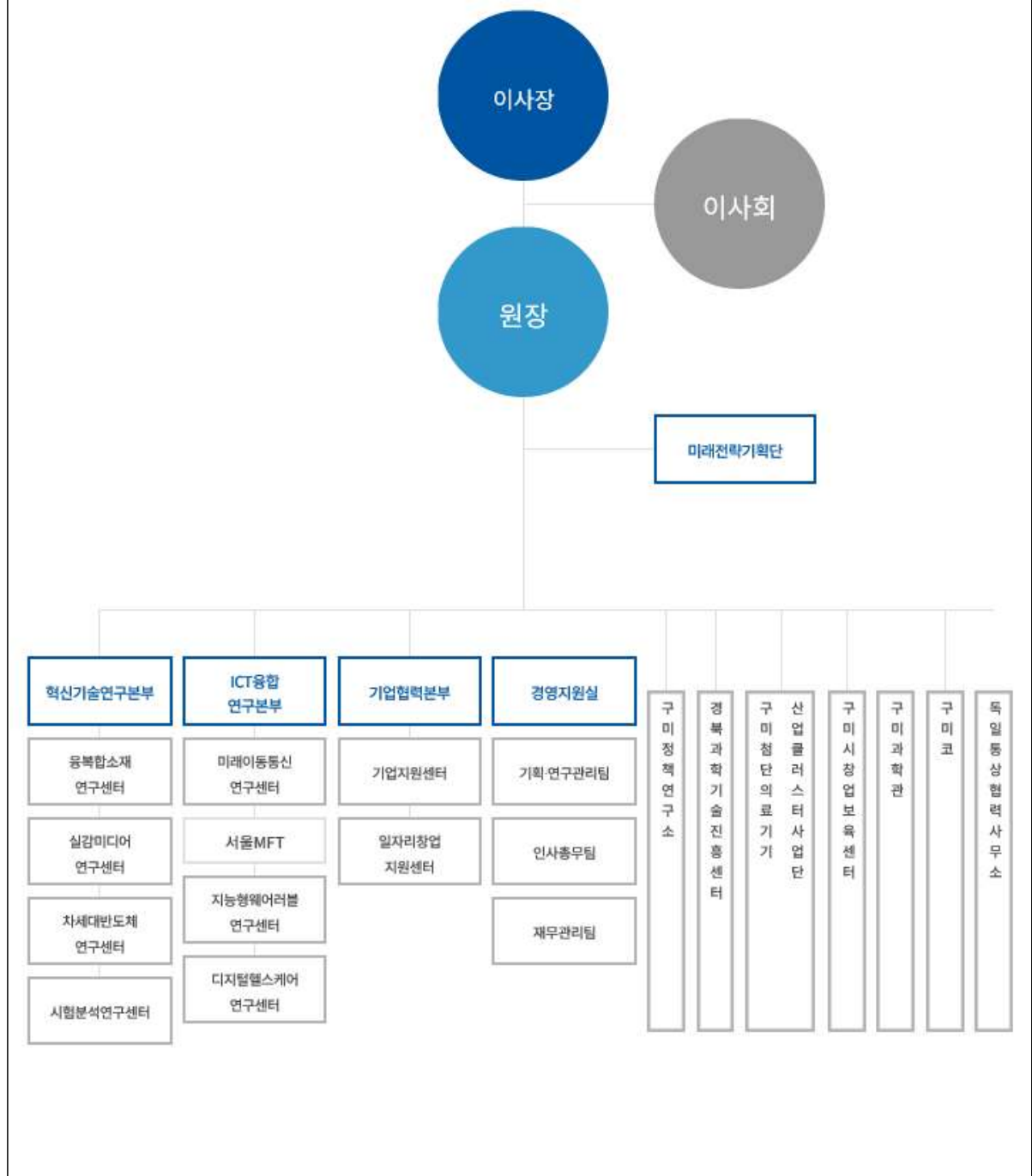
라. 기 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현황(붙임)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현황

①기관명(주소)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주소)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			
②기관소개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및 지역특화산업 연구개발 및 육성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③설립근거	○ 법 률 : 민법 제32조 ○ 규 칙 :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조 례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④연 혁	○ 설립일자 : 2007. 7. 30. ○ 기관명칭 변경 : 해당없음	⑤관계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⑥주요기능	○ 신성장동력산업 및 지역 특화산업의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 산·학·연·관 지역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협력거점 구축 ○ 지역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 및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 지역 전자정보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수립 및 집행 ○ 제품의 규격·성능시험·품질평가 및 품질인증사업 등		
⑦기관장 소개	○ 성 명 : 장세용 ○ 학 력 : 영남대학교(사학) 박사 ○ 경 력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대구경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現)구미시장		
⑧조 직 기구도	*별첨 참고		
⑨공시책임자	○ (담당자)(소속) 인사총무팀 (직책·성명) 선임 박아론 (전화) 054)479-2015 ○ (확인자)(소속) 인사총무팀 (직책·성명) 팀장 박성원 (전화) 054)479-2012		

[별첨]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조직기구도

□ 기 구 : 3 본부, 1 지원실, 1 기획단



관계법령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6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 부품·소재 및 장비·설비(플랜트를 포함한다) 기술
2.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
3.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

4.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시스템 기술
 5.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자원기술
 6.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
 7. 디자인·브랜드·표준 관련 기술, 유통·전자거래 및 마케팅·비즈니스 모델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
 8.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
 9.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첨단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
 10. 삭제 <2013.3.23.>
 11. 개발된 산업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술 간 결합을 통한 시장지향형 융합기술
 13.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술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2.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 ③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 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 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 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2.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기획 등에 대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2. 산업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연구장비·시설·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集積化) 촉진
4.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의 촉진

5.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6.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③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재원의 조달)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 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보조할 수 있다.

소관 실 · 과		신산업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김 창 열
	담 당	박 노 돈
	담 당 자	김 수 진 (480-6163)